

교원인사규정

제정	1997.03.01	개정	2000.02.29
개정	2005.03.21	전부개정	2010.12.24
개정	2011.12.30	개정	2012.09.10
개정	2013.05.01	전부개정	2014.02.07
개정	2014.10.01	개정	2015.09.17
개정	2017.08.14	개정	2018.03.01
개정	2018.11.14.	개정	2019.09.19
		개정	2019.12.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인사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국제대학교 정관(이하“정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대학교(이하“본 대학교”이라 한다) 교원에게 적용할 인사관리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① 교원은 정관 제39조 제2항이 정하는 교원(이하“전임교원”이라 한다)과 정관 제39조 제3항이 정하는 교원(이하“비전임교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교원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으로 구분하고 산학협력중점교원을 포함하며, 산업체경력 5년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임교원은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의 전환 신청을 할 수 있고, 교원인사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총장이 승인한다.<개정 2018.03.01., 2019.12.31.>

③ 비전임교원은 명예교수, 초빙교원, 겸임교원, 특임교수, 객원교수 등으로 구분한다.<개정 2017.08.14., 2019.09.19.>

제3조(규정적용의 범위) 이 규정 제4조 이하는 전임교원에만 적용하고 비전임교원에 대해서는 별도규정으로 정한다.

제4조(직급 및 임무) ① 전임교원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규정된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서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며, 직무에 따라 교육·지도·봉사, 학문연구 또는 산학협력을 담당한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08.14.>

1. 산·학·연 협력사업의 기획 및 관리
2. 산학협력협의회 추진 및 관리
3. 기술지도, 기술개발, 기술이전사업 등의 추진 및 관리
4. 공용장비운영사업 추진 및 관리
5. 현장실습, 인턴십 등을 통한 산학협력 인력양성
6. 취업·창업 관련 업무
7. 기타 산학협력 활성화 업무 추진

② 전임교원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교원업적평가를 받되, 교원업적평가 실시 전에 총장의 승인을 얻은 전임교원에 한하여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교원업적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8.03.01.>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재임용, 승진, 전직, 전보, 겸임, 파견, 휴직, 직위해제, 정직, 복직, 면직, 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 직위라 함은 1인의 교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3. 직급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 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4. 승진이라 함은 직급이 하급으로부터 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5. 복직이라 함은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교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인사발령의 효력 및 소급금지) ①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함께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교원의 인사발령일자는 원칙적으로 소급하지 않는다.

제7조(겸직금지) 교원은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한 직 또는 다른 기관의 전임이 아닌 직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겸임할 수 있다.

제8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65세가 되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다만, 총장은 예외로 한다.

제2장 교원인사위원회

제9조(교원인사위원회) ① 교원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기능, 조직, 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정관 제6장 제3관에 의한다.

제3장 임용

제1절 신규채용

제10조(채용원칙)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정관 제39조의 6에 따라 특별채용 할 수 있다.

② 교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에는 특정 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연도 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 연간 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누적 채용인원이 3명이상이 되는 연도의 말까지를 통산하여 적용한다.

④ 교원의 신규채용에 지원한 자가 신규채용에 관한 심사기준 및 지원별 심사결과 등에 관한 공개를 요구하는 때에는 신규채용 되는 자가 확정된 후에 이를 공개한다. 이 경우 공개되는 내용은 특정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절차) ① 교원의 신규채용은 학과의 특성을 반영하고 다음 각 호의 단계를 거쳐 실시하되, 그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기초심사 :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등의 심사
2. 전공심사 : 기초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의 심사
3. 면접심사 : 전공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인성 등의 심사
4. 공개강의심사 : 면접심사를 통과한 채용후보자에 대한 강의능력 등의 심사

② 제1항의 채용심사를 위한 심사위원은 모집대상 전공분야와 관련이 있는 본 대학교 소속의 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 중에서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채용후보자의 전공과 모집대상 전공분야와의 일치여부 및 채용후보자의 전공에 대한 학문적 우수성을 심사하는 때에는 심사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본 대학교의 교직원이 아닌 자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중점교원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교원을 신규채용하려는 경우에는 지원 마감일 15일전까지 채용분야·채용인원·지원자격등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관보 또는 정보통신망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시기) 교원의 신규채용은 필요한 시기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시채용 할 수 있다.

제2절 재임용

제15조(대상) 재임용대상자는 교원 중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한다.<개정 2017.08.14.>

제16조(절차) ① 재임용대상 교원에게는 임용기간 만료일 4월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반드시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교원이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임용심의를 신청 받은 임면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교원인사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제18조의 교원업적 및 학과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이 규정이 정하는 사항에 근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⑤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7조(시기) 교원의 재임용은 3월 1일, 9월 1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08.14.>

제18조(기준) ① 교원의 재임용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개정 2018.11.14.>

1. 계약기간내의 연구 실적이 200%이상이어야 하며, 1년 단위 재임용 심사를 받는 교원은 100% 이상. 단, 계약기간내에 제출한 교원업적평가 실적으로만 인정(최초 재임용 대상자는 별도 제출)<개정 2017.08.14., 2018.11.14., 2019.09.19.>

2. 해당 임용기간동안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연간 평균 70점 이상. 다만, 재임용 평가 년도는 당해연도 10월31일까지의 교원업적평가 결과 적용<개정 2017.08.14., 2018.11.14.>

3. 1년 단위 재임용 심사를 받는 교원은 임용일부터 당해연도 10월31일까지의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80점 이상.<신설 2018.11.14., 개정 2019.12.31.>

② 삭제 <2014.10.01>

③ 삭제 <2014.10.01>

④ 삭제 <2017.08.14>

제19조(기간산정) ① 제18조에 따라 재임용이 결정된 교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재임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수 : 정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년까지의 기간 또는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2. 부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3. 조교수 :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② 신규채용 후 3년까지 교원의 재임용 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개정 2017.08.14., 2018.11.14.>

제3절 승진임용

제20조(대상) 교원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직급별 최저승진 소요연한과 제23조의 승진임용에 필요한 기

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승진임용 할 수 있다. 다만, 근속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징계처분기간 및 제24조의 승진제한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부교수에서 교수 : 7년 이상
2. 조교수에서 부교수 : 5년 이상

제21조(절차) 제20조에 의한 승진대상자중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개정 2017.08.14.>

제22조(시기) 교원의 승진임용은 3월1일, 9월 1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7.08.14.>

제23조(기준) ① 교원의 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현 직급 재직기간동안 교원업적평가에 제출한 연구 실적의 합계가 200% 이상<개정 2017.08.14., 2019.09.19.>

2. 현 직급 재직기간동안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연간 평균 75점 이상<개정 2017.08.14., 2019.09.19.>

② 삭제 <2014.10.01>

③ 삭제 <2014.10.01>

④ 삭제 <2017.08.14.>

⑤ 승진 후보 대상자를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점수화 하여 총괄표를 작성한다.<신설 2019.09.19.>

1. 연구실적(30%)

2. 업적평가(50%)

3. 개인역량평가(20%)

⑥ 개인역량평가라 함은 교원으로서의 자질 및 품성과 학생지도·교육 능력 등 교원으로서의 갖추어야 할 덕목을 평가함을 말하며, 세부적인 평가 형태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9.09.19.>

제23조의2(특별승진) 교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제20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특별 승진임용 할 수 있다.<개정 2019.12.31.>

1. 교육자로서의 인품과 창의력이 뛰어나고 청렴과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충실하고 교육풍토쇄신에 다른 교원의 귀감이 되는 자

2. 교수·지도 및 연구 등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교육 발전에 지대한 공헌 자

3. 본교 건학이념 구현 및 본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본조 신설 2019.09.19.]

제24조(승진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 될 수 없다.

1. 징계의결요구·징계처분·직위해제 또는 휴직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가. 정직 18월

나. 감봉 12월

다. 견책 6월

제25조(기간 재산정) 승진된 경우에는 임용일로부터 임용기간을 재 산정 한다.

제4절 정년보장

제26조(대상) 교수로 승진된 자는 정년보장대상자가 된다. 다만, 임용기간을 계약으로 정하여 교수로 승진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08.14.>

제27조(절차) 정년보장대상자는 제29조의 정년보장심사위원회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하며 교원인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제28조(기준) ① 교원의 정년보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교원업적평가 결과가 당해 직급 재직기간동안 평균 75점 이상인 자<개정 2017.08.14.>
2. 본 대학교 재직기간이 15년 이상인 자
3. 재직기간 중 본 대학교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 ② 삭제 <2014.10.01>
- ③ 삭제 <2014.10.01>

제29조(정년보장심사위원회) ① 정관 제39조의7에 따라 정년까지 임용할 교원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년 보장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정년보장심사위원회 설치, 기능, 조직, 직무 및 운영에 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년보장심사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보수

제30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로 정한다.

제5장 신분보장

제31조(신분보장)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정관 제40조 내지 제47조의4에 의한다.

제6장 면직

제32조(당연퇴직) 제14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발생한 교원은 당연 퇴직한다.

제33조(면직) 정관 제44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임면권자가 면직 시킬 수 있다. 다만, 정관 제44조의2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장 복무

제34조(복무) 교원의 복무는 「교직원복무규정」에 의한다.

제8장 상벌

제35조(포상) ①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이 포상할 수 있다.

1. 대학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업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2.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타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할 때
3. 재해, 기타 손실을 사전에 예방하여 뚜렷한 공적이 인정될 때
- ②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총장이 심사·결정한다.

제36조(징계) 교원의 징계는 「교원징계처분에 관한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한다.

제9장 보칙

제3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사립학교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외국인전임교원에 관한규정」 및 「학과평가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적용에 관한 특례) 삭제 <2014.10.01>

제4조(8월 31일자 임용기간 만료자에 대한 적용례) 제17조에 따라 8월 31일자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교원의 경우, 재임용기준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재임용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평가기간은 「교원업적 평가규정」 제3조에 의한다.

제5조(재임용,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 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 제23조 및 28조에 의한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 심사의 경우, 필요한 평가기준이 충족되기 전까지는 다음 각 호의 평가결과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 및 활용에 대하여 해당하는 사항별로 교원업적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종전 교원업적평가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2. 「교원업적평가규정」 부칙 제2조에 따른 평가결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0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실적의 인정범위에 대한 적용례) 연구실적의 인정범위는 2015년 03월 0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규정의 개정 당시 재직 중인 교원은 제18조, 제19조 및 제23조에 한하여 본 규정의 개정 후, 최초의 승진·재임용 이후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연구실적의 인정범위에 대한 적용례) 연구실적의 인정범위는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에 한하여 2019학년도에 실시하는 재임용 심사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본 규정 개정당시 재직중인 교원은 제18조에 한하여 본 규정의 개정 후, 최초의 재임용 이후부터 개정된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제3호에 한하여 2020학년도에 임용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